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62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이양수·강선영·이인선

배준영 • 정희용 • 김선교

조경태 • 박덕흠 • 문대림

임종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의 개발·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항만시설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과 자원순환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항만 지원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만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통하여 저탄소를 넘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영(0)을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탄소중립 항만'이 아닌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로 명시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일부 시설이 항만 지원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 정책에 맞추어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생산·저장·유통으로 명확히 함 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다목7) 및 제30조제1항). 법률 제 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7) 중 "신·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저장·유통"으로, "저탄소"를 "탄소중립"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저탄소"를 "탄소중립"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	5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i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			
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			
로 한정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지원시설	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신·재생에너지</u> 관련	7) <u>신·재생에너지의 생산</u>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u>•저장•유통</u>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u>저탄소</u> 항만의 건설			
을 위한 시설	<u>탄소중립</u>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라.ㆍ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① 이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①		
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			

사업법」	능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	가・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
하는 자	-(이하- "정	항만사업	자"라
한다)는	<u>저탄소</u> 형) 만의 유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형	·만시설	이용
에 있어	온실가스	의 오염	념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	P 여야
한다.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